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해야하는가 ?

사회복지학과 202211446 이예진

1. 서론

요즘 소년법 중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촉법소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법원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촉법소년 가운데 대부분이 13세로 전체 촉법소년의 72.7%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소년법 및 형법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커지고 있는데 나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서 찬성한다.

2. 본론

2.1. 촉법소년의 범죄율의 증가율

2.1.1. 해당 연령의 속하는 중학생들의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월 3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수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약 46% 늘어난 수치이며, 5년간 합계는 3만9694명에 달합니다. 법원의 통계도 경찰청의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년 동안 촉법소년의 수는 확실히 증가세이다. 법원의 통계도 경찰청의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수는 2016년 6834건,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에는 1만11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¹⁾ 이것을 통하여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법을 악용하는 사례 증가

2.2.1 지난 해 12월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뒤 업주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여보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 사례는 해당 사건을 벌인 중학생들이 자신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촉법소년 기준 나이인 만 14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6년생으로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²⁾

2.2.2 올해 8월에는 한 중학생이 술 판매를 거절한 편의점 점주와 점원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편의점 주인은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범행 다음날에도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군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범행과정에서 부순 편의점 직원의 휴대전화 사

1) 뉴스톱, “[팩트체크] 촉법소년, 매년 증가 혹은 감소?”, 이강진 기자, 2021.09.07

2) 중앙일보, “‘촉법소년이니 죽여봐’ 모텔 난동 중학생들, 일 커지자 돌변”, 장구슬 기자, 2021.12.14

진을 올린 것으로도 확인됐다.³⁾ 이 사례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이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2.2.3 지난해 3월, 흠친 렌터카 차량을 몰던 13세 소년이 경찰 추적을 피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내 대학 신입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A군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⁴⁾

형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모두 소년법으로 인하여 처벌이 아닌 교화를 위한 처분을 내리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아 쉽게 범죄를 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이를 다양한 범죄 행각을 모방해 다양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3. 반론

인권위는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선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촉법소년의 나이 하향을 하여 처벌을 내려 촉법소년의 범죄를 줄이려는 것은 좋지만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교화시설 확충 및 임시조치와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소년법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⁵⁾

3.1 재반론

2년 전 흠친 렌트카로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촉법소년들이 최근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⁶⁾ 이와 같은 사례처럼 보호처분이 내려진 미성년자들에게도 재범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소년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12.8%, 2018년 12.3%, 2019년 12.8%, 2020년 13.5%, 2021년 12%이고, 성인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6%, 2018년 5.1%, 2019년 5%, 2020년 5%, 2021년 4.5%이다.⁷⁾ 이것을 보았을 때 소년범일 때의 재범률과 나이가 있는 범인들과의 재범률 차이는 2배 이상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호처분이 소년들로 하여금 교화의 역할보단 범죄를 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데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3) 세계일보, “‘나 촉법소년이야’ 술 판매 거절한 편의점 주인 폭행한 10대 검찰 송치”, 박명원 기자, 2022-08-30

4) 조선일보, “차 훔쳐 사람치곤 경찰에 '너무 힘들어요'?...처벌에 40만명 서명”, 조유미 기자, 2020.04.02

5) 뉴시스,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전재훈 기자, 2022.10.26

6) 서울신문, “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냈던 촉법소년들, 이번엔 중학생 폭행”, 김민지 기자, 2022.08.02

7) 통계청,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2022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⁸⁾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았던 촉법소년이 재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정·교화로는 예방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촉법소년이 행하는 범죄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교정·교화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강한 조치를 취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결론

위와 같이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으로 단순히 교정·교화의 방법으로 촉법소년의 범행과 재범행률을 예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법무부의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우리나라의 촉법소년들의 범행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고, 범죄가 늘어날수록 처벌 대상을 늘리려는 방법이다.

소년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성인범보다도 더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촉법소년에게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 형벌보다 보호처분을 내려도 재범행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법무부에 따라 만 13세로 낮추어 조금이라도 처벌 대상을 늘려야 한다. 단 촉법소년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 중 중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처벌 아니면 이와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지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범죄 행위를 위해 편의를 주는 것이며, 그들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하여 형벌을 촉법소년들에게 연령을 하향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처벌마저도 미약함으로 인해 재범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면서도 그 범죄행위를 하고 “나는 촉법소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이를 떠나 자신이 지은 범죄만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교화가 가능할 것이다.⁹⁾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단순히 소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일으키면 처벌받게 된다는 경고가 되어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참고문헌

- 뉴스톱, “[팩트체크] 촉법소년, 매년 증가 혹은 감소?”, 이강진 기자, 2021.09.07.
- 중앙일보, “‘촉법소년이니 죽어봐’ 모텔 난동 중학생들, 일 커지자 돌변”, 장구슬 기자, 2021.12.14.
- 세계일보, “‘나 촉법소년이야’ 술 판매 거절한 편의점 주인 폭행한 10대 검찰 송치”, 박명원기자, 2022-08-30
- 조선일보, “차 훔쳐 사람치곤 경찰에 ‘너무 힘들어요’?...처벌에 40만명 서명”, 조유미 기자, 2020.04.02.
- 뉴시스, “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전재훈 기자, 2022.10.26.

8) 뉴시스,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전재훈 기자, 2022.10.26

9) 점승헌,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2022.08

서울신문, “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났던 촉법소년들, 이번엔 중학생 폭행”, 김민지 기자, 2022.08.02.

통계청,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2022

점승헌,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2022.08